

대구 중구, 충남 부여, 부산 연제, 전체 계약의 67% 이상이 수의계약

시·도 본청 세종, 시 강원 속초, 군 충남 부여, 자치구 대구 중구 가장 높아
수의계약 비율 50% 넘는 곳 33개 지자체, 시-7개, 군-14개, 자치구-12개

작성 : 손종필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1 | <http://www.narasallim.net/> | 336-0619

2022 결산 기준 전국 지자체 수의계약 비율 분석

- 요약 -

-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365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수의계약 비율은 1,000만원 이상의 계약 실적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상회계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임.
- 지방자치단체별 수의계약 비율이 매우 높으며, 전국 평균은 전년 대비 감소 했으나, 군 지역의 경우 37.4%에서 39.9%로 급격히 상승. 특히 대구 중구, 부산 연제구, 충남 부여군의 경우 전체 계약의 2/3 이상이 수의계약임
- 수의계약의 전국 평균은 31.8%이나, 군 지역은 39.9%로 지자체 유형 중 가장 높고, 자치구는 35.0%, 시 지역은 33.8%이며, 시·도 본청이 18.5%로 가장 낮음.
 - 시도 본청을 비교하면 세종특별자치시청이 43.1%로 가장 높은 가운데 그 뒤로 충남본청 31.1%, 제주특별자치도청이 29.43%를 보임.
 - 시 지역에서는 강원 속초시와 동해시, 경기 동두천시가 각각 65.0%, 60.9%, 59.2%로 상위였으며, 강릉시(55.8%)가 5위에 올라 상위 5곳 중 3곳이 강원도임
 - 군 지역에서는 충남 부여군이 67.8%로 전국 243개의 지자체 가운데 두 번째 높은 수의 계약 비율을 보였으며, 그 뒤로 강원 정선군(64.5%), 강원 화천군(59.8%)이 포진하고 있는데 시 지역과 마찬가지로 강원도 4개의 군이 상위 10위권에 포함됨.
 - 자치구의 경우 대구 중구가 67.8%로 가장 높은데 대구 중구의 이러한 비율은 전국 243 개 지자체 가운데 최고의 비율이며, 그 뒤의 부산 연제구가 67.5%로 전국 3위임
- 과도한 수의계약 비율을 보이는 지자체의 경우 지방의회가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기능의 강화와 관련 조례의 제·개정이 필요함

1. 연구배경

-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365를 통해 결산을 기준으로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비율을 공개하고 있음. 해당 계약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1천만원 이상 계약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수의계약은 계약의 여러 유형 중 하나로 경쟁계약이라는 일반적인 계약의 예외적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수준의 비율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며, 특히 일부 지자체의 경우 전체 계약 실적의 2/3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는 등 과도한 측면이 있음
- 시·도별 또는 지자체 유형별 수의계약 비율의 편차가 과도해 구체적으로 지자체별 수의계약 현황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별 과도한 수의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회가 조례 제·개정을 통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강조

2. 수의계약 현황

1) 수의계약의 법적 근거와 장·단점

□ 수의계약의 유형

-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의 종류에는 계약목적물별, 계약 체결 형태별, 경쟁 형태별, 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 방법 등으로 나눌 수 있음
 - 수의계약은 경쟁 형태별 계약 중 하나로 1) 경쟁입찰 계약(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2) 수의계약(금액에 의한 구분, 내용에 의한 구분)이 있음
- 수의계약이란,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
- 수의계약의 유형은 지방계약법 제25조에 근거하며, 법률로서 구체적인 명시를 하고 있음
 - 수의계약의 유형은 2인 이상 견적서 제출과 1인 견적서 제출로 구분하며 유형은 아래 표와 같음

<표 1> 수의계약의 유형

구분	유형	세부기준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금액기준	· 종합공사: 추정가격 4억 원 이하 · 전문공사: 추정가격 2억 원 이하 · 전기·정보통신·소방·그 밖의 공사: 추정가격 1억 6천만원 이하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금액기준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하자구분 곤란 등	· 하자구분 곤란, 혼잡, 마감공사, 특허공법 등에 대한 수의계약(「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가목·나목·다목·마목)
	천재지변 등	·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등 입찰에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등(「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 라목·바목부터 하목까지, 제6호부터 제8호까지) ·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7조) ·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 대안입찰, 일괄입찰 또는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 수의계약 체결의 제한

○ 「지방계약법」 제33조(입찰 및 계약 체결의 제한)에서는 수의계약에 대해 허용을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제한을 두고 있음. 아래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함)면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법인 포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
 -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으로서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위의 1·3·5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과 위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 수의계약의 장·단점

○ 장점

-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신속하게 체결하여 효율적으로 계약을 집행할 수 있음을 수월성을 도모
- 중소기업이나 지역 내 단체 등을 보호, 육성할 수 있는 정책적 효과 달성

○ 단점

- 계약 체결 과정에서 투명성·공정성이 부족해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거래 발생 가능성
- 경쟁의 제한으로 인해 가격 인하의 유인이 낮아 비용이 과다하게 투입될 수 있음
- 계약 과정에 공무원의 자의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큼
- 소수 업체 간 정보 불평등으로 인해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비합리적인 결과를 초래

2) 수의계약 비율

※ 산정기준은 1,000만원 이상 계약 실적이며, 대상회계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임

□ 수의계약 비율 전국 평균 31.8%, 군(郡) 39.9%로 최고, 시·도 본청 18.5%로 최저

- 2022년 결산 기준 전국 지자체의 총계약금액 대비 수의계약 금액의 비율은 31.77%를 보이지만 지자체별 유형에 따라 수의계약 비율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임.
 - 광역시·도 본청의 경우 수의계약 비율은 18.48%로 지자체 유형별로 비교해서 가장 낮으며, 전국 평균보다 13%p 낮은 비율을 보임
 - 자치구의 경우 2019년 소폭 하락 후 2020년과 2021년 2년 동안 7.86%p 상승했는데 2022년에는 1.94%p 하락해 35.0%를 보이는 등 급락을 거듭하고 있음
- 2022년 수의계약 비율은 2021년보다 전체적으로 하락했는데 유일하게 군(郡) 지역에서만 2.5%p 급격히 상승한 것은 유의해서 봐야하는 점임
 - 2018년 대비 2021년까지 수의계약의 비율은 상승세를 보였는데, 유일하게 군(郡) 지역

만 소폭 하락한 점이 특이.

<그림 2> 2022년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수의계약 비율 추이

(단위: %)



자료: 지방재정 365, 지방재정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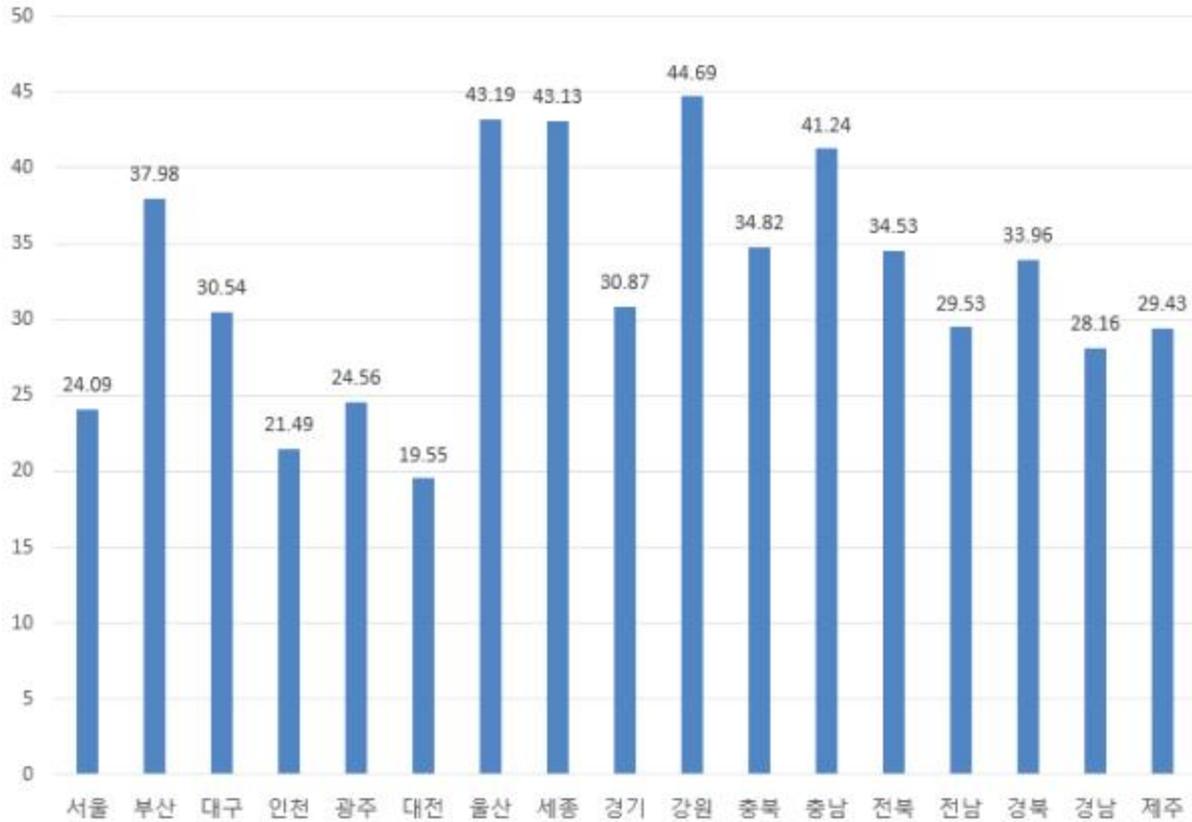
□ 시·도별 수의계약 비율 현황 강원도 44.69%로 최고

- 시·도별(본청+기초 지자체 합산) 수의계약 비율은 강원특별자치도가 44.69%로 가장 높는데 총계약실적 금액이 3조 5,218억원인데 수의계약 실적은 1조 5,738억원임
 - 그 다음으로는 울산광역시가 43.19%, 세종특별자치시가 43.13%를 보였음
 - 수의계약의 비율이 40%를 초과하는 지역은 모두 4곳으로 상위 3개 지역 외에 충청남도가 41.24%를 보였음
-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전광역시로 총계약실적 9,225억원 가운데 1,803억원만 수의계약

을 체결해 19.55%를 보였으며, 그 뒤로 인천광역시 21.49%, 서울특별시 24.09%를 기록했음

<그림 3> 시·도별 수의계약 비율 비교

(단위: %)



주: 시·도별 현황은 본청과 시·군·구의 합산 비율임
 자료: 지방재정 365, 지방재정공시

3) 지자체 유형별 분석

□ 시·도 본청 - 세종시청 43.13%로 가장 높고, 인천광역시청 6.83%로 가장 낮아

- 시·도 본청별로 수의계약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 세종특별자치시청이 총계약금액 3,389억원 대비 수의계약 실적이 1,462억원으로 43.13%의 압도적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로 충청남도 본청이 총계약금액 3,512억원 중 1,091억원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31.07%의 비율을 보였고, 제주특별자치도가 29.43%를 기록함
- 시·도별 비교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던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본청은 26.79%의 비율을 보여 강원특별자치도 기초지자체의 수의계약 비율이 높았음을 유추할 수 있음

- 수의계약 비율이 가장 낮은 본청은 인천광역시 본청으로 6.83%라는 낮은 비율을 보였으며, 근소한 차이로 전라남도 본청이 6.91%를 보였으며, 대전광역시 본청이 11.47%로 3번째 낮은 비율을 보임

<표 3> 시·도 본청 수의계약 비율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수의계약실적금액 (A)	총계약실적금액 (B)	수의계약비율 (A/B)x100
세종본청	146,150	338,894	43.13
충남본청	109,116	351,185	31.07
제주본청	348,128	1,182,857	29.43
부산본청	124,268	458,446	27.11
강원본청	115,788	432,181	26.79
울산본청	47,664	187,294	25.45
대구본청	126,662	537,912	23.55
전북본청	59,431	259,493	22.90
충북본청	75,980	394,854	19.24
서울본청	386,856	2,044,436	18.92
경북본청	151,417	835,103	18.13
광주본청	103,097	605,843	17.02
경기본청	79,182	476,423	16.62
경남본청	66,311	535,799	12.38
대전본청	62,747	546,974	11.47
전남본청	74,350	1,076,241	6.91
인천본청	105,787	1,548,764	6.83

자료: 지방재정 365, 지방재정공시

□ 시(市) 지역 - 속초, 동해, 강릉시 등 강원도 지역 높은 비율 보여

- 시 지자체 가운데 수의계약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 속초시로 총계약실적 866억 원 가운데 562억원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65.0%의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뒤로 같은 강원도의 동해시가 933억원 계약금액 중 568억원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60.9%의 비율을 보임. 강원도의 경우 5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강릉시를 포함할 경우 상위 10개 시 가운데 3개나 포함됨

- 시 지자체의 경우 수의계약 비율이 절반을 넘는 곳이 모두 7개로 파악이 되는데 수의계약이 절반을 넘는 곳은 신속한 계약의 체결과 효율적 집행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과도한 측면이 있음
- 시 가운데 수의계약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남 거제시로 4,151억원의 전체 계약실적 가운데 수의계약은 630억원에 그쳐 15.2%의 비율을 보여 시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10%를 보였음.
- 거제시의 뒤를 이어 경기 평택시 21.2%, 경남 양산시 21.8%의 순으로 높아지는데 3개 시를 포함해 30% 이하인 시는 모두 22개에 그치고 있음

<표 4> 수의계약 비율 상위 10개 시(市)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수의계약실적금액 (A)	총계약실적금액 (B)	수의계약비율 (A/B)x100
강원속초시	56,244	86,597	64.95
강원동해시	56,783	93,277	60.88
경기동두천시	53,647	90,628	59.20
충남당진시	79,006	134,555	58.72
강원강릉시	143,855	258,004	55.76
충남서산시	98,769	187,218	52.76
경기오산시	31,285	60,218	51.95
경기과천시	15,951	31,909	49.99
전남목포시	53,491	113,529	47.12
경북영주시	68,584	147,022	46.65

자료: 지방재정 365, 지방재정공시

□ 군(郡) 지역 - 충남 부여, 강원 정선·화천군 수의계약 비율 상위 차지

- 군 지자체 가운데 총계약실적 대비 수의계약실적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군은 충남 부여군으로 총계약실적이 1,271억원인데 수의계약실적이 861억원으로 무려 67.76%의 비율을 보여 전체 계약실적의 2/3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임.
- 부여군 다음으로는 강원도 정선군과 화천군이 높은 비율을 보이는데 각각 64.5%, 59.8%인데, 특이한 점은 군 지역 상위 10개 지자체 가운데 강원도 기초 지자체인 정선군, 화천군, 평창군, 고성군 등 4개 지자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임. 시 지역에서 3개(속

초시, 동해시, 강릉시)의 지자체가 상위 10개 지자체에 포함된 점을 상기하면 강원도 전체의 수의계약 비율이 44.7%를 기록한 이유가 일부나마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음.

- 군 지자체 가운데 수의계약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지자체는 모두 14개인데, 상위 10개 지자체를 포함해 경남 함안, 강원 영월·횡성, 충남 금산군이 포함됨
- 군 지자체 가운데 가장 낮은 수의계약 비율을 보인 곳은 전남 진도군으로 20.9%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충남 서천군(25.3%), 전남 함평군(25.7%) 등 7개의 지자체가 30% 이하의 수의계약 비율을 보였음

<표 5> 수의계약 비율 상위 10개 군(郡)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수의계약실적금액 (A)	총계약실적금액 (B)	수의계약비율 (A/B)x100
충남부여군	86,119	127,103	67.76
강원정선군	104,978	162,737	64.51
강원화천군	53,666	89,811	59.75
충북보은군	73,031	122,317	59.71
강원평창군	76,028	127,640	59.56
울산울주군	97,741	165,835	58.94
강원고성군	79,666	142,823	55.78
경북예천군	71,501	128,988	55.43
경북청송군	54,781	99,899	54.84
전남완도군	89,020	166,787	53.37

자료: 지방재정 365, 지방재정공시

□ 자치구 - 대구 중구(67.8%)·부산 연제구(67.5) 전체 계약의 2/3를 수의계약

- 자치구 가운데 수의계약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대구 중구로 총계약실적 210억 원 가운데 2/3가 넘는 143억원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67.83%의 비율을 보였으며, 부산 연제구 또한 442억원의 총계약 실적 가운데 67.5%인 298억원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음.
- 이 외에 부산 동래구와 서울 송파구가 60%를 초과하는 수의계약 비율을 보였으며, 상위 10개 자치구 포함 광주 북구, 부산 북구까지 12개의 자치구가 총계약 실적의 50%가 넘는 비율을 보였다는 점에서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수의계약 비율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서울 마포구로 1,033억원의 총계약 실적 가운데

데 수의계약으로 124억원을 체결해 12.0%의 비율을 보였으며, 그 뒤로 서울 강남구 18.8%, 서울 용산구 18.9%를 보였으며, 20% 3개 자치구를 비롯해 30% 이하의 비율을 보인 자치구는 모두 23개로 나타남.

<표 6> 수의계약 비율 상위 10개 자치구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수의계약실적금액 (A)	총계약실적금액 (B)	수의계약비율 (A/B)x100
대구중구	14,258	21,020	67.83
부산연제구	29,826	44,183	67.50
부산동래구	24,813	38,584	64.31
서울송파구	56,703	91,426	62.02
인천중구	41,106	70,979	57.91
울산남구	29,801	51,943	57.37
인천부평구	54,979	95,842	57.36
인천서구	66,645	120,193	55.45
부산남구	34,108	62,606	54.48
부산동구	16,562	30,526	54.26

자료: 지방재정 365, 지방재정공시

3. 나라살림연구소 의견

- 수의계약의 비율이 몇 % 이하여야 적정하다라는 규정이나 사회적 합의는 없음. 하지만 총계약실적의 50% 이상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과도한 수의계약은 쪼개기 계약 등에 의해 발생하는 측면이 일부 존재하므로 지자체의 경우 계약 체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해당 비율을 축소할 필요가 있음
- 지방의회 차원에서 과도한 수의계약을 방지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조례의 제·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 수의계약 공정성 확보를 위해 조례상의 지침 제정 및 수의계약 건수·총액제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가 해당 내용을 포함한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경기도의 경우 2021년 수의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을 마련해, 1인 견적 수의계

약 의뢰 전 과업 수행 자격 충족 여부, 수의계약 배제 사유 등을 사전 심의해 1인 수의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등 일반회계 수의계약 절차 개선했으며

- 2인 이상 견적대상을 2천만 원 초과에서 1천만 원 초과로 확대하고, 1인 견적대상은 2천만 원 이하에서 1천만 원 이하로 축소했으며. 동일업체 1인 견적 계약 건수는 연 3회로 제한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 사례가 있음

- 유사·동일사업 통합발주를 통한 예산 절감 및 사업추진역량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서 간 통합발주 활성화와 세분화된 쪼개기 계약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해결과 공정계약을 실현할 필요가 있음.
- 지방의회의 경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수의계약 체결의 적정성, 특정업체로의 쓸림 계약, 공무원의 과도한 자의성 개입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계약 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부록> 202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비율 현황

(출처: 지방재정 365, 지방재정통합공시 수의계약비율)

<표 7> 2022년 결산 기준 지방자치단체별 수의계약 비율

단위:백만원, %

자치단체	수의계약실적금액 (A)	총계약실적금액 (B)	수의계약비율 (A/B)x100
서울본청	386,856	2,044,436	18.92
서울종로구	27,304	102,014	26.77
서울중구	14,008	41,335	33.89
서울용산구	15,085	79,816	18.90
서울성동구	33,733	74,711	45.15
서울광진구	23,122	64,795	35.68
서울동대문구	21,364	77,909	27.42
서울중랑구	22,226	92,535	24.02
서울성북구	35,330	99,780	35.41
서울강북구	14,839	52,913	28.04
서울도봉구	25,139	92,143	27.28
서울노원구	31,541	118,347	26.65
서울은평구	31,848	155,400	20.49
서울서대문구	25,084	95,410	26.29
서울마포구	12,355	103,328	11.96
서울양천구	24,889	91,535	27.19
서울강서구	74,520	166,284	44.81
서울구로구	20,745	96,263	21.55
서울금천구	19,522	80,377	24.29
서울영등포구	20,014	78,865	25.38
서울동작구	29,185	95,971	30.41
서울관악구	34,188	119,237	28.67
서울서초구	28,795	130,454	22.07
서울강남구	33,035	175,663	18.81
서울송파구	56,703	91,426	62.02
서울강동구	14,425	45,509	31.70
부산본청	124,268	458,446	27.11
부산중구	7,956	18,564	42.86
부산서구	25,388	54,774	46.35
부산동구	16,562	30,526	54.26
부산영도구	24,593	62,960	39.06
부산부산진구	19,760	63,538	31.10
부산동래구	24,813	38,584	64.31
부산남구	34,108	62,606	54.48
부산북구	22,339	43,914	50.87
부산해운대구	26,653	66,790	39.91

부산사하구	22,944	80,887	28.37
부산금정구	21,995	55,730	39.47
부산강서구	28,106	71,521	39.30
부산연제구	29,826	44,183	67.50
부산수영구	16,131	37,449	43.08
부산사상구	18,353	41,686	44.03
부산기장군	40,832	96,350	42.38
대구본청	126,662	537,912	23.55
대구중구	14,258	21,020	67.83
대구동구	20,250	50,114	40.41
대구서구	17,183	51,064	33.65
대구남구	7,200	19,181	37.54
대구북구	28,288	84,059	33.65
대구수성구	31,520	114,211	27.60
대구달서구	27,509	66,224	41.54
대구달성군	48,925	110,027	44.47
인천본청	105,787	1,548,764	6.83
인천중구	41,106	70,979	57.91
인천동구	12,322	31,593	39.00
인천미추홀구	11,976	47,314	25.31
인천연수구	67,262	141,976	47.38
인천남동구	30,035	101,368	29.63
인천부평구	54,979	95,842	57.36
인천계양구	15,952	47,813	33.36
인천서구	66,645	120,193	55.45
인천강화군	70,957	174,361	40.70
인천옹진군	64,446	139,030	46.35
광주본청	103,097	605,843	17.02
광주동구	37,030	69,569	53.23
광주서구	19,108	58,217	32.82
광주남구	19,681	65,466	30.06
광주북구	27,804	85,888	32.37
광주광산구	33,401	92,726	36.02
대전본청	62,747	546,974	11.47
대전동구	22,453	46,636	48.15
대전중구	16,363	43,350	37.75
대전서구	29,245	121,743	24.02
대전유성구	29,460	108,128	27.25
대전대덕구	20,036	55,626	36.02
울산본청	47,664	187,294	25.45
울산중구	32,365	66,030	49.02
울산남구	29,801	51,943	57.37
울산동구	12,834	31,427	40.84
울산북구	25,388	66,545	38.15
울산울주군	97,741	165,835	58.94
세종본청	146,150	338,894	43.13
경기본청	79,182	476,423	16.62

경기수원시	102,272	274,386	37.27
경기성남시	106,862	323,088	33.08
경기고양시	84,501	306,877	27.54
경기용인시	144,958	448,699	32.31
경기부천시	69,627	221,181	31.48
경기안산시	65,265	168,992	38.62
경기안양시	50,322	173,621	28.98
경기남양주시	57,320	178,030	32.20
경기화성시	139,633	499,436	27.96
경기평택시	91,090	429,015	21.23
경기의정부시	51,801	180,818	28.65
경기시흥시	74,098	245,925	30.13
경기파주시	86,504	253,404	34.14
경기광명시	34,543	98,614	35.03
경기김포시	87,781	238,099	36.87
경기군포시	36,435	120,848	30.15
경기광주시	60,618	236,576	25.62
경기이천시	105,839	309,847	34.16
경기양주시	77,284	222,812	34.69
경기오산시	31,285	60,218	51.95
경기구리시	21,662	84,897	25.52
경기안성시	94,683	254,994	37.13
경기포천시	55,705	157,886	35.28
경기의왕시	24,764	98,694	25.09
경기하남시	40,783	181,593	22.46
경기여주시	71,770	197,121	36.41
경기동두천시	53,647	90,628	59.20
경기과천시	15,951	31,909	49.99
경기양평군	83,136	246,819	33.68
경기가평군	39,314	117,998	33.32
경기연천군	42,304	135,799	31.15
강원본청	115,788	432,181	26.79
강원춘천시	99,846	249,619	40.00
강원원주시	94,830	217,290	43.64
강원강릉시	143,855	258,004	55.76
강원동해시	56,783	93,277	60.88
강원태백시	30,127	74,800	40.28
강원속초시	56,244	86,597	64.95
강원삼척시	116,366	266,642	43.64
강원홍천군	91,215	213,895	42.64
강원횡성군	82,775	163,058	50.76
강원영월군	123,543	242,067	51.04
강원평창군	76,028	127,640	59.56
강원정선군	104,978	162,737	64.51
강원철원군	77,062	196,313	39.25
강원화천군	53,666	89,811	59.75
강원양구군	50,815	188,427	26.97

강원인제군	71,548	179,652	39.83
강원고성군	79,666	142,823	55.78
강원양양군	48,687	136,987	35.54
충북본청	75,980	394,854	19.24
충북청주시	128,039	397,846	32.18
충북충주시	84,556	193,230	43.76
충북제천시	64,714	198,155	32.66
충북보은군	73,031	122,317	59.71
충북옥천군	43,386	110,146	39.39
충북영동군	35,691	83,714	42.63
충북증평군	21,509	56,943	37.77
충북진천군	40,369	92,888	43.46
충북괴산군	53,194	142,450	37.34
충북음성군	50,327	130,754	38.49
충북단양군	38,590	114,188	33.80
충남본청	109,116	351,185	31.07
충남천안시	161,471	392,021	41.19
충남공주시	73,862	203,555	36.29
충남보령시	85,912	194,667	44.13
충남아산시	145,777	341,270	42.72
충남서산시	98,769	187,218	52.76
충남논산시	67,169	181,647	36.98
충남계룡시	13,800	53,831	25.64
충남당진시	79,006	134,555	58.72
충남금산군	52,509	104,286	50.35
충남부여군	86,119	127,103	67.76
충남서천군	43,441	171,991	25.26
충남청양군	50,235	101,116	49.68
충남홍성군	57,012	151,673	37.59
충남예산군	99,573	248,903	40.00
충남태안군	55,770	157,535	35.40
전북본청	59,431	259,493	22.90
전북전주시	79,197	330,231	23.98
전북군산시	57,667	153,594	37.55
전북익산시	76,453	254,974	29.98
전북정읍시	84,626	201,287	42.04
전북남원시	61,677	160,375	38.46
전북김제시	72,382	164,076	44.12
전북완주군	76,258	163,866	46.54
전북진안군	66,927	147,269	45.45
전북무주군	51,635	147,862	34.92
전북장수군	56,349	167,885	33.56
전북임실군	62,542	178,899	34.96
전북순창군	47,028	117,433	40.05
전북고창군	67,878	207,505	32.71
전북부안군	66,267	201,291	32.92
전남본청	74,350	1,076,241	6.91

전남목포시	53,491	113,529	47.12
전남여수시	79,963	224,753	35.58
전남순천시	100,400	275,198	36.48
전남나주시	50,697	202,999	24.97
전남광양시	59,746	229,938	25.98
전남담양군	53,200	117,394	45.32
전남곡성군	51,555	152,575	33.79
전남구례군	63,035	199,897	31.53
전남고흥군	78,393	219,696	35.68
전남보성군	59,461	187,996	31.63
전남화순군	1,731	4,249	40.73
전남장흥군	85,896	200,917	42.75
전남강진군	47,455	102,469	46.31
전남해남군	121,356	258,505	46.95
전남영암군	59,107	129,040	45.81
전남무안군	70,554	201,983	34.93
전남함평군	36,703	142,629	25.73
전남영광군	65,532	172,135	38.07
전남장성군	46,674	124,718	37.42
전남완도군	89,020	166,787	53.37
전남진도군	42,259	202,146	20.90
전남신안군	109,061	372,051	29.31
경북본청	151,417	835,103	18.13
경북포항시	127,685	423,012	30.18
경북경주시	112,207	261,933	42.84
경북김천시	78,537	292,057	26.89
경북안동시	110,215	267,216	41.25
경북구미시	77,784	224,776	34.60
경북영주시	68,584	147,022	46.65
경북영천시	72,348	244,774	29.56
경북상주시	103,579	280,969	36.86
경북문경시	67,717	198,373	34.14
경북경산시	55,037	161,883	34.00
경북군위군	33,839	81,909	41.31
경북의성군	91,278	232,902	39.19
경북청송군	54,781	99,899	54.84
경북영양군	56,783	127,970	44.37
경북영덕군	60,810	176,467	34.46
경북청도군	44,164	114,930	38.43
경북고령군	35,623	96,513	36.91
경북성주군	68,038	253,970	26.79
경북칠곡군	34,710	79,204	43.82
경북예천군	71,501	128,988	55.43
경북봉화군	55,453	140,429	39.49
경북울진군	92,620	195,255	47.44
경북울릉군	27,980	95,677	29.24
경남본청	66,311	535,799	12.38

경남창원시	158,416	618,968	25.59
경남진주시	107,231	353,850	30.30
경남통영시	53,022	197,938	26.79
경남사천시	66,456	267,145	24.88
경남김해시	71,269	276,626	25.76
경남밀양시	100,254	323,259	31.01
경남거제시	63,046	415,118	15.19
경남양산시	69,475	318,072	21.84
경남의령군	56,920	147,256	38.65
경남함안군	56,318	174,615	32.25
경남창녕군	51,040	154,814	32.97
경남고성군	83,176	199,874	41.61
경남남해군	56,003	173,615	32.26
경남하동군	79,140	234,673	33.72
경남산청군	55,667	177,760	31.32
경남함양군	62,569	119,010	52.57
경남거창군	91,042	191,293	47.59
경남합천군	96,188	246,934	38.95
제주본청	348,128	1,182,857	29.43